

『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학교급식법」이 전문개정(2007.1.20 시행)됨에 따라 개정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는 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”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
- 시장 소속하에 두는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·설비비로 확대하고,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·제3조)
-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(안 제4조)
-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지도·감독 및 정보공개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「학교급식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「학교급식법」 전문개정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두는 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”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학교급식 경비 지원 범위 확대(안 제2조~제3조)
 - 우수 식재료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제3항)
 - 식품비, 운영비, 시설·설비비로 확대(안 제3조)
-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(안 제4조)
 -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
-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지도·감독 및 정보공개(안 제11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학교급식법」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” 및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
-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원범위를 운영비 및 시설·설비비로 넓히고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지원대상에 포함 하며,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의 설립 목적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각급 학교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, 타 시·군의 운영모델을 비교·분석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내 실 있는 “학교급식지원센터” 설립 방안 모색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